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1014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1. A

2. B 주식회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변론 종결2018. 11. 28.

판결 선고2018. 12. 1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5,421,386원 및 그 중 34,304,034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8. 6. 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7. 5.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A와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2017. 5.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를 청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으로, 피고 A에게 아래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피고 A가 신용보증서에 기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보증서번호 : 0

보증일 : 2011. 5. 19.

보증금액 : 38,250,000원 (34,425,000원으로 변경)

대출예정금액 : 45,000,000원

보증기한 : 2012. 6. 1. (2017. 5. 26.으로 변경)

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상대처 : 기업은행 화성남양지점

나. 피고 A는 2011. 6. 2. 위와 같은 신용보증서에 기해 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9. 2.경 수원지방법원에 2016회단10035호로 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10. 18. 기업은행에 대한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16. 10. 18. 기준으로 35,421,386원(= 대위변제금 34,304,034원 + 채권보전비용 등 1,117,352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5. 1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A가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거주하는 '화성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중 20,250,000원 부분에 관하여, 2017. 7. 24.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양도(이하 2017. 5. 17.자 채권양도행위를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고 하고, 2017. 7. 24.자 채권양도행위를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C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35,421,38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34,304,03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10. 1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31.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피고 B에 양도한 것으로, 위 채권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은 A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인 C에게 이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A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는 A가 피고 B에 거래상 부담하던 물품대금 채무액 약 16억 원 중 일부인 20,250,000원 가량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가 피고 B에게 물품대금 16억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가운데 그러한 채무의 약 1%에 불과한 20,250,000원 상당만을 변제하기 위하여 A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채무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적극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제2채권양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피고 공사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는 A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의 안정 및 이를 통한 재기가 주된 목적이었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피고 공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다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공사는 2014. 12. 18. A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A는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G은행으로부터 84,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대출금으로 A는 2014. 12. 19.경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보증서번호 : H

보증일 : 2014. 12. 18.

보증금액 : 75,600,000원

대출예정금액 : 84,000,000원

보증기한 : 2016. 12. 19.

대출과목 : 화성시 E아파트, F호 임대아파트 보증금 명목

보증상대처 : G은행

(나) 그런데 A가 G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9. 2.경 수원지방법원에 2016회단10035호로 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 공사는 A를 대위하여 2017. 2. 13. G은행에 75,614,2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A는 채권자들의 반대에 따라 위 회생신청이 2017. 4. 7. 폐지되자 2017. 5. 29. 피고 공사에 거주하던 주거의 안정 등을 통한 재기의 목적으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채무의 감면을 요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7. 6. 28.경 A에게 분할상환 초입금으로 7,560,000원을 지급받고,

96회에 걸쳐서 매회 717,700원씩을 상환하도록 채무감면을 해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A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7. 10.경까지는 분할상환금을 피고 공사에게 성실히 납부하였다.

(4)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 A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 공사의 신용보증 덕분인 바, 반면에 피고 공사는 이러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A를 대신하여 7500여만 원에 달하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 공사로서는 회생폐지 이후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채무자 A의 요청에 따라 A의 주거안정 및 이를 통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무를 감면하여 주고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한 점, ③ 실제 채무자 A는 B 등에게 수십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규모는 매우 미비하다고 보이는 점, ④ 실제 A가 피고 공사의 채무 감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재기하면서 부채 등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의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담보명목으로 이뤄진 이 사건 제2채권양도행위가 쉽사리 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순건

별지